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11. 4. / (총 11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송 은 철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전 화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보건복지부	과 장	이 두 리		044-202-3870
정신건강관리과	담 당 자	이 정 신		044-202-3873
울산광역시	과 장	이 재 업		052-229-3610
재난관리과	담 당 자	오 선 수		052-229-42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심리방역 강화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방역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강도대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식당과 주점, 음악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 **감염**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식사 전후, 목욕탕이나체육시설의 탈의실 등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곳까지는 최대한** 착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지원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걷기 등 적당한 신체활동과 소중한 사람 들과의 영상통화를 활성화하는 등의 마음건강 홍보(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월 12일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실시하고 있다.
 -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자(책임자)·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하는 취약노동자의 진단검사와 격리를 돕기 위해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격리가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2일 기준으로 898명을 지원하였다.
 - * 요양보호사,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한편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학원·교습소 및 PC방·오락실 등 총 8,763개소에 대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발열체크 미흡, 전자출입 명부 미사용 등 1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울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울산시는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정신요양병원 등 104개소에 대하여 방역관리자 지정, 의심종사자 배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 또한, 핼러윈데이를 맞아 10월 31일에는 관내 주요지역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295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 10월 19일부터는 **가을철 관광지와 고위험시설** 등 1만1408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1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우선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모임·행사**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도록 한다.
 - 또한,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일반관리 시설에 대해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밀집·밀접 접촉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울산시는 거리 두기 개편내용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누리집 (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관련 시설과 협회·기관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11월 7일(토)부터**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이하 '심리지원 대책')」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9개 부처에서 52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그간 통합심리지원단*과 관계부처는 일반 국민, 확진자·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92만 건, 정보제공 173만 건 등 26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하였고,
 - *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지자체)로 구성(1.29.~)
 - 특히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숲케어 프로그램(산림청), 웰니스 관광지 치유 프로그램(문화체육 관광부) 등을 지원하였다.

< 지자체 우수 추진 사례 >

- ▲ (서울 '마음방역차') 1t 트럭에 무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공연 개최(총 4회 계획, 1회는 소방 구급대원 대상 10.29. 실시)
- ▲(대전 '하루만보 혼자걷기 기부 챌린지') 하루만보 걷기 실천하면 1보당 1원 기부, 2인의 챌린저를 지정하여 릴레이 참여
- □ 이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던 **협의체 회의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참석대상**을 관계부처뿐 아니라 **시도까지 확대**한다.
 -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심리방역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 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 아울러, "적당한 신체활동과 함께 마음건강 수칙을 준수하며,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건강 관리'의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한다.
 - '걷기' 등의 신체활동을 통해 지친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난달 발간한 '한국인을 위한 걷기 지침'*과 연계하여 홍보를 추진한다.
 - * 주요 내용 : 걷기의 중요성·효과, 걷기 권장량, 올바른 걷기 자세 등
 -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마음건강 수칙을 새롭게 마련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내용을 국민참여 기획행사(이벤트)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 * (마음통화) 감염병 상황으로 만남이나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지만, 영상통화 등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이어가자는 메시지
- □ 중앙재난안전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시도에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음건강 홍보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00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96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103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1.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3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11월 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177개소, ▲ 음식점·카페 2,994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1611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4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54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71개반, 228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워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